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#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조)
  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내용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1월 20일(2016. 1. 21. 시행) 개정되어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

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근거법령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상 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본 조례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